

제2547호
2017. 11. 0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 | |
|---|------|
| 선 | 기관의장 |
| 람 | |

구 보

- 공 고
제2017-760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
| 람 | | | | | | | | | | | | |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760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일자리 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
- 조직개편·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실행 중심의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의 부서명칭 변경
 - 「취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조례안 제6조, 시행규칙안 제15조의2)
- 조직개편과 관련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간 업무조정
 -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시장경제과 → 일자리경제과(시행규칙안 제15조의2)
 -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시장경제과 → 일자리경제과(시행규칙안 제15조의2)
 -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시장경제과 → 일자리경제과(시행규칙안 제15조의2)
 - 중구상공회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경제과 → 일자리경제과(시행규칙안 제15조의2)
 - 금연업무: 건강도시과 → 위생과(시행규칙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여관동), 문의전화:3396-4513, FAX:3396-8603, 메일:sjg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취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6조(기획재정국) ①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시장경제과, 취업지원과,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 제6조(기획재정국) ①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시장경제과, 일자리경제과 , 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 | |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취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본문 중 “취업지원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17.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8.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19. 중구상공회 관리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3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연운동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5조(시장경제과) 시장경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 2. 물가인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농수축산유통 및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6.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1. 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격표사제 지도점검 및 계량기 검사에 관한 사항 13.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4.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16.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17. 중구상공회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위조상품관리에 관한 사항 19.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p>제15조(시장경제과) 시장경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가인정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농수축산유통 및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3.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 4.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5. 대부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등에 관한 사항 9.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0. 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1. 가격표사제 지도점검 및 계량기 검사에 관한 사항 12.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p><삭 제></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위조상품관리에 관한 사항 15.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현행 | 개정안 |
|--|--|
| <p>제15조의2(취업지원비)취업지원비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5.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 <p>제15조의2(일자리경제과)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5. (현행과 같음)</p> <p><u>16.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u></p> <p><u>17.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u></p> <p><u>18. 인쇄특장기별진흥지구에 관한 사항</u></p> <p><u>19. 중구상공회 관리에 관한 사항</u></p> |
| <p>제37조(건강도사파) 건강도사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생략)</p> <p><u>10. 금연운동 등에 관한 사항</u></p> <p>11. ~ 13. (생략)</p> | <p>제37조(건강도사파) 건강도사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11. ~ 13. (현행과 같음)</p> |
| <p>제38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2. 공중위생업소(위생용품 제조업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3. 위생업소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p> <p>4.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p> <p><u><신설></u></p> | <p>제38조(위생과)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2. 공중위생업소(위생용품 제조업 포함)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p> <p>3. 위생업소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p> <p>4.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p> <p><u>5. 금연운동 등에 관한 사항</u></p> |

일괄개정필요자치법규제출목록(예시)

| 연번 | 구분 | 자치법규 | 해당조항 | 개정안 | 소관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 1 |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2조제2항 |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을"「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으로개정. | 복지지원과 | OOO | 2345 |
| 2 | 규칙 | 서울특별시중구성실납세자등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중구세무조사운영규칙」"을"「서울특별시중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으로개정.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회관충무아트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개정. | 세무1과 | OOO | 1235 |
| 3 | 훈령 |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실 내부운영 규정 | 제3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민원처리에관한법률」"으로개정. | 민원여권과 | OOO | 2347 |